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진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568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:정진술 의원(1명) 찬 성 자 :김기대, 김상진, 김수

자 :김기대, 김상진, 김수규, 김정태, 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노승재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송명화, 양민규, 임종국, 최웅식, 홍성룡, 황규복, 황인구 의워(19명)

# 1. 제안이유

○ 2021. 5. 18. 개정된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·예방조치를 마련 시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가 신설되었음.

또한 감염병 방역 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 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 거 규정도 마련되었음.

이에 개정사항을 조례상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, 감염병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에 발생한경영상 중대한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체육시설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의 노력의무를 반영함(안 제4조제2항 신설).
- 나.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제3항 신설).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・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"체육시설"이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 제목 "(재정 지원)"을 "(지원)"으로 한다.

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의2. "체육시설"이란 「체육시
	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
	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
	<u>을 말한다.</u>
2. ~ 13. (생 략)	2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책무) (생 략)	제4조(책무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
	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
	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
	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역 및
	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
	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
	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
	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
	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
	하여야 한다.
제18조 <u>(재정 지원)</u> ①·② (생	제18조 <u>(지원)</u> ①·② (현행과 같
략)	승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

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.

문서번호

2021072700000010

# 비용추계서

요 청 인 : 정진술 의원 담당: 조도형 과장

이원상 팀장

이혜린 예산분석관

접 수 일: 2021.07.27

회 신일: 직접입력

내용문의: 02-2180-7955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Ⅰ. 비용추계 요약
- 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#### Ⅰ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3항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○ 제18조제3항의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관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 비용

### 나. 전제

- 지원비는 2020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비를 참고·준용하여 추계
- 민간 체육시설은 2020년 기준 11,317개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※참고) 2020년 민간체육시설 현황

	신고업						자유업				
합계 	소계	당구장	체 력 단련장	체육 도장	골 프 연습장	수영장	기타 시설*	소계	탁구장	볼링장	GX 시설*
11,317	10,115	3,273	2,524	2,173	1,838	125	182	1,202	324	138	740

※ 기타시설 : 종합체육시설 91, 무도학원 64, 무도장 10, 빙상장 13, 썰매장 3, 요트장 1※ GX시설 : 줌바, 태보, 요가, 에어로빅 등

- 유흥업소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
-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관내체육시설에 임대료,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지출을 위한 7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 폐업 시 지원금 미지급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추계기간

○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기간을 고려하여 1년으로 추계

#### 라. 방법

○ 서울시 예산서, 사업별설명서, 업무보고 자료 및 담당자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≒ 15,843,800천원 = 700,000원\*2개월\*11,317개소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- Jan		_	-	-	-	-	_
세입	소계(a)	-	-	-	-	-	_
川츠	생존자금 지원 (제18조제3항)	15,843,800	-	-	-	_	15,843,800
세출	(세10조세3왕) 소계(b)	15,843,800	_	_	_	_	15,843,800
□ 총 비용(b-a)		15,843,800		-	-		15,843,8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## 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주 무 관 이혜린

**№** 02-2180-7955

e-mail: lovelynn91@seoul.go.kr

## 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 1. 비용요소

○ 제18조제3항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관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비용

## 2. 세부추계내역

○ 생존자원 지원비 ≒ 15,843,800천원 = 700,000원\*2개월\*11,317개소

※생존자원지원비는 2020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

### [붙임1]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

(단위: 백만원)

주관부서	2020년 예산	사업 내용	관련 조항
노동민생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	575,587	<ul> <li>서울소재 지영업자 생존자금 지원</li> <li>700,000원*2개월*410,400개소</li> <li>운영비 지원</li> <li>-기간체근로 인력지원</li> <li>2,496,000원*5명*25개구*2개원</li> <li>-시업 홍보 등 지원</li> <li>400,000원*2개소*425개동</li> <li>-컴퓨터 등 사무기기 임차지원</li> <li>500,000원*5개*25개구</li> </ul>	제18조제3항

자료: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제출 자료 및 「2020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실행계획」(20.5.) 재작성